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정성국
김승수 · 우재준 · 이성권
이종배 · 조지연 · 정동만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

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할당계획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할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온실가스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할당계획의 평가 등) ①</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u> <u>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u> <u>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u> <u>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u> <u>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u> <u>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u> <u>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u> <u>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u> <u>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u> <u>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u> <u>검과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u> <u>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u> <u>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u> <u>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온실가</u>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 ----- ----- -----<u>온실가</u>

<u>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u>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온실가스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